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 탈퇴 규정**

##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 탈퇴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입”은 체육회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 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 임원 명단(개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 부산광역시 법인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개정 2017.12.21.>
-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 시·도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개정 2017.12.21.>
- 구·군종목단체 설치 현황 <개정 2017.12.21.>
-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4.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5.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에 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3분의 2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 구·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17.12.21.>
  7. <삭제 2017.21.21>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해당 구·군종목단체가 3분의 1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올림픽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와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2분의 1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구·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개정 2017.12.21.>
  7. <삭제 2017.12.21.>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해당 구·군종목단체가 4분의 1이상, 아시안게임 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올림픽종목 및 아시안게임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와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3분의 1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 구·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17.12.21.>
7. <삭제 2017.12.21.>
8.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9. 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 7 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체육회 규약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종목과 아시안게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개정 2017.12.21.>

**제 8 조(등급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른다.

③ 유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체육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④ 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선  
설 2017.12.21.>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체육회 규약 제9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체육회 규약 제8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신설 2017.12.21.>

③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체육회 규약 제9조제4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체육회 규약 제9조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구)부산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부산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 다만, 통합 대상 단체가 체육회 첫 번째 이사회 이후 정한 기간내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통합을 하여 정관(규약)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본다.

② 비통합 대상단체는 체육회 첫 번째 이사회 이후 정한 기간내에 회장선출 및 신규집행부를 구성하여 정관(규약)을 승인 받아야 회원종목단체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기간내 정관(규약)을 승인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단체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단체가 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한 단체로 본다.

④ 제4조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부산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부산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 2단체 중 상위 등급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비통합대상종목의 경우는 (구)부산시체육회 및 (구)부산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등급을 승계한다.

##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접수일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① 단체명		② 연락처
	③ 주소		
	④ 성명(한자)		⑤ 생년월일
	⑥ 현 주소		
⑦ 설립 연월일			
⑧ 설립목적			
⑨ 회원 및 지회 현황	회원수		지회수
⑩ 아시아/국제연맹과의 관계	명칭		회원가입 여부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동 정관 제7조 및 「가입·탈퇴규정」에서 정한 권리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 붙임서류

- |                                 |                                      |
|---------------------------------|--------------------------------------|
| 1.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 9. 구·군지회 설치 현황                       |
|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
| 3.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 1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4. 단체 정관(규약)                    | 12.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 5.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 13. 해당 단체의 국제 및 아시아 경기연맹에<br>관한 참고자료 |
| 6.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                                      |
| 7.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 14. 기타 (국내대회 개최실적 및 국제대회<br>입상현황 등)  |
| 8. 구·군지회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                                      |

[별지 제2호서식]

## 신원진술서(약식)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주택전화 :
직장	직장명 :					직장전화 :
	소재지 :					휴대폰 :
학력	학교명	기간		전공학과	학위	소재지
		..	~	..		
		..	~	..		
		..	~	..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간		직책(직급)	상별관계(일자)	
		..	~	..		
		..	~	..		
		..	~	..		
해외거주사실	거주국가	기간		거주목적	동반가족	
		..	~	..		
		..	~	..		
병역	군별	기간		병과	최종계급	군번
		..	~	..		
배우자부모자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li> <li>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li> </ol>						
작성자      성명				년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관리 · 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 본인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 · 수사 · 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